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567 발의연월일: 2024. 8. 5.

발 의 자 : 임이자 · 박해철 · 유용원

조지연 · 송언석 · 신성범

김종양 · 김위상 · 최은석

우재준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순환골재의 용도별 품질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고,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순환골재를 생산·판매하기 위하여는 위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또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순환골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인증을 할 수 있고,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을 제정하여 아스팔트콘크리트용, 콘크리트용, 도로공사용으로 3개의 순환골재 품질인증 용도를 규정하여 2007년부터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순환골재 품질인증의 품목 3개 중 2개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하 'KS인증')과 중복되고, 그 기준도 거의 동일하여 2014년 규제개혁위원회의 범부처 인증제도 개선방안의일환으로 순환골재 품질인증을 KS인증과 통합하고자 하였으나 중단

되었고, 2020년 12월 범부처 인증제도 실효성 검토를 통하여 재추진이 결정되었으나 현재까지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임.

특히, 순환골재 품질인증은 주로 생산된 순환골재가 품질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것과 달리 KS인증은 품질기준 준수 여부이외에도 품질경영, 자재관리, 공정관리, 소비자보호 조치현황 등도 심사하여 순환골재에 대한 품질관리 강화가 요구되는 최근의 추세를 고려하면 순환골재 품질인증과 KS인증의 통합이 필요함.

이에 따라, 이 법에 규정된 순환골재 품질인증을 KS인증과 통합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6조, 제36조의2, 제37조및 제63조).

법률 제 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 ① 순환골재를 생산하거나 판매하려는 자는 「산업표준화법」 제15 조에 따른 제품인증을 받을 수 있다.
- ② 품질인증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다.

제36조의2 및 제37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63조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혀 행

제36조(순환골재의 품질인증 등) 제36조(순환골재의 품질인증 등)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순환골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증(이하 "품질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 ② 품질인증의 기준, 인증관리 방법 및 인증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 로 정한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품질인증 된 사항에 대하여 운영실태조사 등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며, 조 사 결과 품질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정 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36조의2(품질인증의 결격사유)
 국토교통부장관은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품질인증을 하여서는 아니 된
 다.
 - 1. 제37조에 따라 품질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개 정 안

- ① 순환골재를 생산하거나 판매 하려는 자는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제품인증을 받을 수 있다.
- ② 품질인증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 외하고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다.

<u><삭 제></u>

<삭 제>

아니한 경우

- 2. 제63조제9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 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때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 3. 법인의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 중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제37조(품질인증의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품질인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품질인증
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
지 또는 제4호가목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할 때에는 인증을 취소
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 2. 품질인증을 사용하지 못하는 기간에 품질인증을 사용한 경우 <삭 제>

- 3. 제25조에 따라 건설페기물 처리업의 허가가 취소된 경우
- 4. 제35조에 따른 품질기준에 미달하거나 부적합한 제품을 생산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경우
 - 가. 사람들에게 중대한 위해
 를 끼치거나 시설물의 주
 요 구조부가 붕괴되거나
 재시공이 필요하게 된 경
 수
 - <u>나. 건설공사의 품질 또는 안</u> 전에 지장을 준 경우
- 5. 제36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 령 등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 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제6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저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 8. (생략)
 - 9. 제36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 <삭 제> 증을 받지 아니하고 품질인증

| 세63조(벌칙) |) |
|----------|-----------------|
| | |
| | |
| | <u>.</u> |
| 1 0 / | 원세기 기 () |

1. ~ 8. (현행과 같음) <u><삭 제></u>

| <u>을 사용한 자</u> | |
|---------------------|------------------|
| 10.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 <u><</u> 삭 제> |
| 법으로 제36조제1항에 따른 | |
| 품질인증을 받은 자 | |
| 11. (생 략) | 11. (현행과 같음) |